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제1장 측량 및 지반조사 -

(대비표)

<목차비교>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제1장 측량 및 지반조사		
2-1 공사측량	1-1 공사측량		
2-2 지반조사	1-2 용지 경계 측량		
	1-3 지반조사계획		
	1-4 지표지질조사		
	1-5 물리탐사		
	1-6 시추조사		
	1-7 시험굴조사와 핸드오거보링		
	1-8 원위치시험과 시험굴착		
	1-9 시료채취		
	1-10 토질시험		
	1-11 암석시험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1.6 <u>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성과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성과물을 공사완료까지 유지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u> 3.1.7 <u>측량성과에 대해서는 그 성과표에 대한 책임측량 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	3.1.7 <u>시공자는 당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고 관련 성과품을 보존하여야 한다.</u> 3.1.8 <u>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사, 검사,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에는 측량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3.1.9 <u>준공측량업체는 업무범위의 적법성, 능력과 전문성을 검비하여야 하며, 준공측량 범위는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가 결정한다. 준공측량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준공측량 도면은 수치지도 작성작업 규칙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u> 3.1.10 <u>준공측량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측 자료가 없을 시는 탐사방법에 의해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u>	■ 내용 보완 ■ 공사, 검사, 준공측량의 측량 성과품 제출 명시 ■ 준공측량 범위 명기 ■ 준공측량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은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수정 추가 추가 추가
3.2 노선답사 3.2.1 측량기술자는 노선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한다. 3.2.2 현장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세, 지형, 지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3.2.3 현장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세부측량계획을 수립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2.4 <u>세부측량 계획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u>	3.2 노선답사 3.2.1 측량기술자는 노선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한다. 3.2.2 현장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세, 지형, 지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3.2.3 현장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세부측량계획을 수립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2.4 <u>세부측량 실시계획은 감독자에게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중·횡단도면 및 관련 도면 제작시의 축척, 측량방법, 인원, 투입장비, 등의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u>	■ 세부측량 실시계획 내용 포함 명기	추가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3 선 점 3.3.1 측량기술자는 측량의 능률, 정확도의 확보, 측표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측량구역의 지세, 지형, 지물에 알맞은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3.3.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측각과 측거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 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3.3.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3.3 선 점 3.3.1 측량기술자는 측량의 능률, 정확도의 확보, 측표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측량구역의 지세, 지형, 지물에 알맞은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3.3.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측각과 측거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 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을 선점한다. 3.3.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3.4 측량기준점 설치 3.4.1 표고기준점 (1) <u>측량기술자는 도선의 시작과 끝 등 최소 2 지점에 표고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u> (2) 표고기준점 측량방법은 <u>왕복수준측량을</u> 하며, 공사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가 수준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u>또는</u>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함하여야 한다. (3) <u>측량의 정밀도는 국가2등 수준점에 준한다.</u> 3.4.2 평면기준점 (1) 시공자는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u>약 10km</u> 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u>평면기준점은 반드시 2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삼각측량·삼변측량·트래버스 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u>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함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u>GPS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기타 구체적인 측량방법 및 정밀도는 국가 3, 4등 삼각점 또는 정밀2차 기준점에 준한다. (3) 평면기준점의 설치위치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u>가급적 높거나 견고한 지반을 선정하여야 한다.</u>	3.4 측량기준점 설치 3.4.1 표고기준점 (1) <u>현장 내 표고기준점은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u> (2) 표고기준점의 측량 방법은 <u>폐합 및 결함 수준측량을</u> 하며, 공사현장으로부터 가까운 국가수준점에서 출발하여 <u>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함하여야 한다.</u> 다만, <u>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시 그 수준점은 다른 수준점에 결함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u> (3) <u>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수준점)이 설치되어 있으면 국가 수준점에서 위(2)항의 방법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u> 3.4.2 평면 기준점 (1) 시공자는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u>약 500m</u> 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u>평면기준점의 위치결정은 반드시 3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GPS측량·삼각측량·삼변측량·트래버스망 측량방법으로 실시·결정한다.</u>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함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u>기타 사항은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감독자가 결정한다.</u> (3) <u>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이 기설치되어 있으면 국가삼각점에서 위(2)항의 방법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u> (4) 평면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u>가급적 시통이 양호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GPS등의 장비사용에 장애물이 없는 지점을 선점하여야 한다.</u>	■ 현장내 표고 기준점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m 간격 설치 명기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고시(안) 2002.8.3」 ■ 문구수정 및 내용 보완 ■ 10km 간격 ⇒ 500m 간격으로 수정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고시(안) 2002.8.3」 ■ 2점 이상 ⇒ 3점 이상 ■ 내용보완 ■ 내용보완	수정 수정 수정 추가 추가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4) <u>기준점이 일부 멸실 되거나 또는 파손되어 지면의 재측량이 요구되는 경우 및 변동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재설치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5) 재 설치된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기설치된 기준점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u>기준점이 일부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반 변위 및 장애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기준점의 사용을 중지, 감독자에게 현황을 즉시 보고한 후 재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5) 재 설치된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기설치된 기준점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내용 보완	수정																																																																																		
3.5 세부측량일반 3.5.1 시공자는 세부측량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u>소요인원의 확보와 작업조 편성</u> (2)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3)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 (4) <u>측량구역내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u> (5) <u>산림의 벌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u> (6) 측량관계법령 숙지 등 3.5.2 측량시 좌표의 계산결과 표시는 <u>표 2-2</u> 에 따른다. <u>표 2-2 측량시 좌표의 계산결과 표시방법</u> <table><tr><td>구분</td><td>방향각</td><td>거리</td><td>표고</td><td>좌표값</td><td>비고</td></tr><tr><td>단위</td><td>초</td><td>m</td><td>m</td><td>m</td><td></td></tr><tr><td>자리수</td><td>1</td><td>0.001</td><td>0.001</td><td>0.001</td><td></td></tr></table> 3.5.3 관측점간의 허용오차 범위는 <u>표 2-3</u> 에 따른다. <u>표 2-3 관측점간의 허용오차범위</u> <table><tr><td>구 분</td><td>허용범위</td><td>비 고</td></tr><tr><td>수평각</td><td>40〃</td><td></td></tr><tr><td>연직각</td><td>-</td><td></td></tr><tr><td>거리(mm)</td><td>5</td><td></td></tr></table> 3.5.4 거리측량의 계산값과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u>표 2-4</u> 에 따른다. <u>표2-4 거리측량의 허용오차 범위</u> <table><tr><td>구 분</td><td>허용오차범위</td><td>비 고</td></tr><tr><td>평지(mm)</td><td>S/2,500~S/3,000</td><td rowspan="2">S는 측점간의 거리(m)</td></tr><tr><td>산지(mm)</td><td>S/500~S/1,000</td></tr></table>	구분	방향각	거리	표고	좌표값	비고	단위	초	m	m	m		자리수	1	0.001	0.001	0.001		구 분	허용범위	비 고	수평각	40〃		연직각	-		거리(mm)	5		구 분	허용오차범위	비 고	평지(mm)	S/2,500~S/3,000	S는 측점간의 거리(m)	산지(mm)	S/500~S/1,000	3.5 세부측량일반 3.5.1 시공자는 세부측량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u>요구정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측량방법, 인원, 장비 확보</u> (2) <u>측량 작업 인원 편성표 작성</u> (3)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4)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 (5) <u>측량구역 내의 출입에 따른 인·허가</u> (6) <u>산림의 벌목 및 측량장애물 제거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및 소유주와의 협의</u> (7) 측량관계법령 숙지 등 3.5.2 측량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와 표시는 <u>표 1-1-2</u> 에 따른다. <u>표 1-1-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 표시방법</u> <table><tr><td>구분</td><td>방향각</td><td>거리</td><td>표고</td><td>좌표값</td><td><u>면적</u></td><td><u>체적</u></td></tr><tr><td>단위</td><td>초</td><td>m</td><td>m</td><td>m</td><td><u>m²</u></td><td><u>m³</u></td></tr><tr><td>자리수</td><td>1</td><td>0.001</td><td>0.001</td><td>0.001</td><td><u>0.01</u></td><td><u>0.01</u></td></tr></table> 3.5.3 관측점간의 허용오차 범위는 <u>표 1-1-3</u> 에 따른다. <u>표 1-1-3 관측점간의 허용오차범위</u> <table><tr><td>구 분</td><td>단위</td><td>허용범위</td><td>비 고</td></tr><tr><td>수평각</td><td>초</td><td>40〃</td><td></td></tr><tr><td>연직각</td><td>초</td><td>-</td><td></td></tr><tr><td>거 리</td><td>mm</td><td>5</td><td></td></tr></table> 3.5.4 거리측량의 계산값과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u>표 1-1-4</u> 에 따른다. <u>표 1-1-4 거리측량의 허용오차 범위</u> <table><tr><td>구 분</td><td>허용오차범위</td><td>비 고</td></tr><tr><td>평지(mm)</td><td>S/2,500~S/3,000</td><td rowspan="2">S는 측점간의 거리(m)</td></tr><tr><td>산지(mm)</td><td>S/500~S/1,000</td></tr></table>	구분	방향각	거리	표고	좌표값	<u>면적</u>	<u>체적</u>	단위	초	m	m	m	<u>m²</u>	<u>m³</u>	자리수	1	0.001	0.001	0.001	<u>0.01</u>	<u>0.01</u>	구 분	단위	허용범위	비 고	수평각	초	40〃		연직각	초	-		거 리	mm	5		구 분	허용오차범위	비 고	평지(mm)	S/2,500~S/3,000	S는 측점간의 거리(m)	산지(mm)	S/500~S/1,000	■ 내용 보완
구분	방향각	거리	표고	좌표값	비고																																																																																
단위	초	m	m	m																																																																																	
자리수	1	0.001	0.001	0.001																																																																																	
구 분	허용범위	비 고																																																																																			
수평각	40〃																																																																																				
연직각	-																																																																																				
거리(mm)	5																																																																																				
구 분	허용오차범위	비 고																																																																																			
평지(mm)	S/2,500~S/3,000	S는 측점간의 거리(m)																																																																																			
산지(mm)	S/500~S/1,000																																																																																				
구분	방향각	거리	표고	좌표값	<u>면적</u>	<u>체적</u>																																																																															
단위	초	m	m	m	<u>m²</u>	<u>m³</u>																																																																															
자리수	1	0.001	0.001	0.001	<u>0.01</u>	<u>0.01</u>																																																																															
구 분	단위	허용범위	비 고																																																																																		
수평각	초	40〃																																																																																			
연직각	초	-																																																																																			
거 리	mm	5																																																																																			
구 분	허용오차범위	비 고																																																																																			
평지(mm)	S/2,500~S/3,000	S는 측점간의 거리(m)																																																																																			
산지(mm)	S/500~S/1,000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6 IP점 설치 3.6.1 측량기술자는 기작성된 실시설계 성과품을 사용하며, <u>4등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이용하여 방사법 및 교회법에 의기 결정한다. 이때 계산값과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본절 3.5.4의 표 2-4에 따른다.</u> 3.6.2 IP점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측량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본절 3.4.4의 표 2-1에 따른다.	3.6 IP점 설치 3.6.1 측량기술자는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품을 사용하며, <u>현장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표고)을 이용 GPS 또는 토탈스테이션(T.S)장비, 데오도라이트, 전자파거리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측량·설치한다.</u> 3.6.2 IP점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량·설치하여야 하며,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u>표1-1-1에 따른다.</u> 단, IP점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인조점을 설치, 사용할 수 있다.	■ 내용 보완	수정
3.7 중심선측량 3.7.1 측량기술자는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를 사용하며, <u>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u> 3.7.2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중·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의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 등 <u>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u> 3.7.3 측점에 설치할 말뚝의 규격은 본절 3.4.4의 표 2-1에 따른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은 20m 또는 50m를 측점간격으로 할 수 있다. 3.7.4 거리측정은 광파 또는 전자파 거리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짧은 거리는 강철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3.7 중심선측량 3.7.1 측량기술자는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에 따라 중심선 측량을 <u>현지에서 실시하며, 이때 번호가 기록된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 포장 등으로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철물 및 페인트로 표시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u> 3.7.2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중·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 등의 <u>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 등에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점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u> 3.7.3 측점에 설치할 말뚝의 규격은 본절 3.4.4의 표 1-1-1에 따른다. 3.7.4 거리측정은 전자파 거리측정기(광파 또는 전파), T.S.장비 또는 <u>GPS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0m 이하의 짧은 거리는 강철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u>	■ 내용 보완 ■ 내용 보완	수정 수정
3.8 가BM 설치측량 3.8.1 측량기술자는 중단측량 및 횡단측량에 필요한 수준점을 현장에 설치하고 표고는 계산하여 구한다. 다만, 하천 등에서 거리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BM으로 사용할 수 있다. 3.8.2 가BM 설치 측량은 평지에서는 <u>2등</u> 수준측량, 산지에서는 <u>4등</u> 수준측량으로 한다. 3.8.3 가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BM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가BM말뚝의 규격은 본절 3.4.4의 표 2-1에 따른다.	3.8 가BM 설치측량 3.8.1 중·횡단측량시 필요한 임시수준점 (가BM, TBM)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 설치된 표고 기준점으로부터 측량하여 가BM의 표고를 결정,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하천 등에서 거리표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가BM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거리표 성과는 표고 기준점으로부터 측량·확인되어야 한다. 3.8.2 가BM의 설치 측량은 평지에서는 <u>1~3급</u> 수준측량, 산지에서는 <u>1~4급</u> 수준측량으로 한다. 3.8.3 가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BM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가BM말뚝의 규격은 본절 3.4.4의 표 1-1-1에 따른다.	■ 내용 보완 ■ 2등⇒ 1~3급, 4등⇒ 1~4급으로 수정	수정 수정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9 종단측량 3.9.1 측량기술자는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에 설치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를 구한다. 3.9.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3.9.3 관측점이 가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가BM에 폐합한다. 3.9.4 종단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3.9.5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3.9 종단측량 3.9.1 종단측량은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 또는 중요점에 설치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 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표고)를 결정한다. 3.9.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간접수준측량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9.3 관측점이 가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가BM 또는 표고 기준점에 결함하며, 성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9.4 종단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3.9.5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이때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점은 페인트 또는 철물 재료로 표시할 수 있다.	■ 내용 보완	수정
3.10 횡단측량 3.10.1 측량기술자는 횡단측량시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 지반고가 변화하고 있는 지점의 고저 및 중심말뚝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한다. 3.10.2 횡단측량의 지반고 측량은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의 횡단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측량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10 횡단측량 3.10.1 측량기술자는 횡단측량시 좌·우횡단 측량 범위는 용지경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0.2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로 지반고가 변하는 지점의 고저 또는 표고와 중심말뚝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다. 3.10.3 횡단측량의 지반고 측량은 지형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이에 적합한 측량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직접수준측량 이외의 측량방법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0.4 측량된 결과로 종·횡단 도면 작성시, 축척, 도면규격, 작성 방법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내용 보완 및 추가	추가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11 횡단구조물의 측량 3.11.1 측량기술자는 설계된 횡단구조물이 수로 또는 도로방향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횡단구조물의 유입구 및 유출구를 연결하는 현장 확인 횡단측량을 실시한다. 3.11.2 횡단측량의 범위는 토공 경계선에서 최소한 좌·우 50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배수처리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배수종말지점까지 배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3 시공자는 횡단측량결과 주위지형을 고려하여 접속도로 또는 수로와의 접속이 현지지형에 맞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 횡단구조물의 측량 3.11.1 측량기술자는 설계된 횡단구조물이 수로 또는 도로방향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횡단구조물의 유입구 및 유출구를 연결하는 현장 확인 횡단측량을 실시한다. 3.11.2 횡단측량의 범위는 토공 경계선에서 최소한 좌·우 50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배수처리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배수종말지점까지 배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3 시공자는 횡단측량결과 주위지형을 고려하여 접속도로 또는 수로와의 접속이 현지지형에 맞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4 기타 횡단측량시 중요구조물의 조사범위는 감독자가 결정한다.	■ 내용 추가	추가
3.12 용지경계표주 설치 측량 3.12.1 시공자는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4등 이상의 기준점, 주요점, 중심점 등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표주를 설치한다. 3.12.2 용지경계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12.3 용지경계표주는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 표주마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적색 깃발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4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구분 표시를 한다. 3.12.5 용지경계표주 설치기준으로 평지구간은 200m 내외, 곡선구간은 50m 내외, 산지부 및 경계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극점에 설치하여 도로용지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용지경계가 명확하도록 한다. 3.12.6 용지경계표주의 규격은 표 2-5에 따른다.		■ 용지경계측량 분리	수정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12 지하시설물의 측량 3.12.1 <u>공사구역 내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전에 지하시설물 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3.12.2 <u>지하시설물 주변의 굴착이나 지하시설물의 이설,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시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지하시설물의 관리기관과 협의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u> 3.12.3 <u>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시설물의 매설시는 되메우기나 포장 이전에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실측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u> 3.12.4 <u>실측된 지하시설물 현황은 공사 준공시에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치화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실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탐사방법에 의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u> 3.12.5. <u>지하시설물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가 되어야 한다</u>									■ 내용 추가				추가	
3.13 측량성과품의 정리 3.13.1 시공자의 측량성과품 정리는 <u>표 2-6</u> 에 따르며, 측량성과품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u>표 2-6</u> 측량성과품의									3.13 측량성과품의 정리 3.13.1 시공자의 측량성과품 정리는 <u>표 1-1-5</u> 에 따르며, 측량성과품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u>표 1-1-5</u> 측량성과품의									■ 내용 추가				추가	
구분	기준점 측량	IP설치 측량	중심선 측량	가BM 설치측량	종단 측량	횡단 측량	구조물 측량	용지경계 측량	구분	기준점 측량	IP설치 측량	중심선 측량	가BM 설치측량	종단 측량	횡단 측량	구조물 측량	준공 측량						용지경계 측량
측량야장	○			○	○	○	○		측량야장	○			○	○	○	○							
좌표값 기록대장	○	○	○					○	측량 계산부	○	○		○	○		○	○						
성과표	○			○	○		○		관련도면					○	○	○	○						○
인조점 관리도		○	○	○					좌표값 기록대장	○	○	○											○
									성과표	○			○	○		○	○						
									인조점 관리도		○	○	○										
									수치파일							○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12 용지경계표주 설치 측량 3.12.1 시공자는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4등 이상의 기준점, 주요점, 중심점 등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표주를 설치한다. 3.12.2 용지경계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12.3 용지경계표주는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 표주마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적색 깃발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4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 구분 표시를 한다. 3.12.5 용지경계표주 설치기준으로 평지구간은 200m 내외, 곡선구간은 50m 내외, 산지부 및 경계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극점에 설치하여 도로 용지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용지경계가 명확하도록 한다, 3.12.6 용지경계표주의 규격은 <u>표 2-5</u>에 따른다.	1-2 용지 경계 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방서는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용지 경계 측량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지방서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u>용지경계표주 설치도</u>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용지경계표주 설치 측량 3.1.1 시공자는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 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4등 이상의 기준점, 주요점, 중심점 등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표주를 설치한다. 3.1.2 용지경계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1.3 용지경계표주는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 며, 각 표주마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적 색 깃발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 구분 표시를 한다. 3.1.5 용지경계표주 설치기준으로 평지구간은 200m 내외, 곡선구간은 50m 내외, 산지부 및 경계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극점에 설치하여 도로 용지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용지 경계가 명확하도록한다, 3.1.6 용지경계표주의 규격은 <u>표 1-2-1</u>에 따른다.	■ 용지경계측량 분리	추가

2-2 용지 경계 측량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표 2-5 용지경계표주 규격							표 1-2-1 용지경계표주 규격								추가
재질	길이	폭(1변)	지표상	지하	바탕색	글씨 마크	재질	길이	폭(1변)	지표상	지하	바탕색	글씨 마크		
수지	75cm	10cm	25cm	50cm	흑색	백색 (음각)	수지	75cm	10cm	25cm	50cm	흑색	백색 (음각)		
콘크리트	75cm	10cm	25cm	50cm	콘크리트색	백색 (음각)	콘크리트	75cm	10cm	25cm	50cm	콘크리트색	백색 (음각)		
							3.2 용지도 보완 3.2.1 용지경계표주 설치가 완료되면 용지조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2.2 기 제출된 용지도 등이 용지경계 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 용지경계 측량 성과와 부합되게 성과가 제출된후 30일 이내에 용지도와 조서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내용추가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1-3 지반조사계획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방은 과업의 설계 및 공사에 필요한 지반정보를 얻기 위한 지반조사에 적용한다. 지반조사는 도로체, 교량, 보강옹벽 및 기타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1.1 1단계: 예비조사 및 계획수립 1.1.2 2단계: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1.1.3 3단계: 실내시험 1.1.4 4단계: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해당사항 없음.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공 3.1 예비조사 및 계획수립 3.1.1 본 단계는 현장조사 전 대상지반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3.1.2 실내예비조사: 지질도,지형도,기존 구조물현황, 수계현황도, 항공측량도 등 실내 문헌에 의한 조사를 포함한다 3.1.3 현장예비조사: 기존포장, 기존구조물, 절성토체, 산사태, 기반암분포, 광산분포, 수계현황등 조사등 현장에서 관찰되는 지반상태를 포함한다 3.1.4 계획수립 : 토취, 사토, 절성토, 주변자연조건(연못, 개울등), 시추위치, 구조물위치(교량, 지하통로, 보강토), 연약지반 등 공사에 필요한 조사항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3.2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3.2.1 현장조사는 시추조사와 현장원위치시험 및 물리탐사를 포함하며,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조사항목 및 수량을 선정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2.2 시추조사는 표준관입시험 및 교란시료채취를 포함하며, 공경은 NX구경을 표준으로 한다. 3.2.3 현장원위치시험은 공내재하시험, 공내투수시험, 수압시험, 공내전단시험, 공내영상촬영, 공내검층 등을 포함하며, 공중별 필요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반조사에 대한 단계별 지방규정 삽입	■ 추가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2 지표지질조사	3.2.4 시료채취는 시추조사에 의한 교란시료와 불교란시료 및 지표면에서 채취된 시료를 포함한다. 3.2.5 물리탐사는 탄성파탐사 , 전기비저항탐사, 공간탄성파탐사등을 포함하며, 지반의 연속적인 변화 및 위험구간 파악을 위해 실시한다. 3.3 실내시험 3.3.1 실내시험은 토질시험 및 암석시험을 포함한다. 3.3.2 실내시험은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지반의 물리 역학적 특성을 규명하여 설계정수산정 및 지반안정성분석을 위해 실시한다. 3.3.3 시험은 공인된 기관 및 업체에서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실시하여 시험결과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3.4 지반조사보고서 3.4.1 지반조사보고서는 예비조사 및 현장조사 , 실내시험 결과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3.4.2 지반조사보고서는 각 조사항목에 따른 성과물을 수록하여야 한다. 3.4.3 보고서에 수록되는 내용은 조사목적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내용과 필요시 주의 및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도 수록해야 한다.	■ 지반조사에 대한 단계별 지방규정 삽입	■ 추가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2 지표지질조사	1-4 지표지질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방서는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지표지질조사 및 터널 막장관찰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ASTM D 4879 암반 막장관찰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지방서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용지질도(Engineering geology map) 등의 지표지질조사 성과표 (2) 막장관찰일지 등의 막장관찰 성과표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지표지질조사 및 막장관찰은 지반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나 경험을 구비한 자로서 응용지질도 및 터널지질도를 작성하고 지반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3.1.2 실제 지반상태가 설계시의 적용조건과 상이하여 설계보완이 필요할 경우 상세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내용추가	■ 추가
3.2.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분포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기 실시된 조사의 <u>보완자료로</u>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3.2.2 지표지질조사를 통하여 <u>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지질조사는 1/25,000~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u>	3.2 지표지질조사 3.2.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분포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기 실시된 조사의 <u>보완자료나 상세조사의 참고자료로</u>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3.2.2 지표지질조사를 통하여 <u>불연속면 및 구조대의 방향성, 발달상태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지질조사는 1/25,000~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한 응용지질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및 조사목적에 맞는 축척의 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다.</u>	■ 내용보완	■ 수정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2.3 지표지질조사시에는 응용지질도에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층지반 : 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퇴적물, 선상지퇴적물, 단구퇴적물, 붕괴퇴적물, 화산분출물 등)의 분포상태 (2) 암질 : 암석의 종류, 입도, 조암광물과 배열, 공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등 (3) 지질구조 : 지질분포, 지층의 성층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4) 지하공동 : 자연공동(석회동굴 등),광산갱도, 폐광등의 과거 갱도 등 (5) 암반거동 : 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가능 지반의 유무와 분포상태. 편압가능성 등 (6) 지표수와 지하수 : 지표수의 유하상태, 지하수 부존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수위, 대수층과 지질과의 관계, 용수상황 등	3.2.3 지표지질조사는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층분포상태 : 표층, 풍화대심도, 암종 및 암질, 파쇄대, 지표수 및 지하수 분포상태 등 (2) 구조지질 : 불연속면(단층, 습곡, 절리) 및 구조대의 방향성 및 연장성 , 틈새 , 충전물 , 면상태 등 (3) 지하공동 : 자연공동(석회암동굴 등), 광산갱도, 폐광 등의 과거 갱도 등 (4) 지질재해가능성분석 : 과거 재해 이력 및 산사태 등의 붕괴가능성 파악, 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 편토압 발생 가능성 등 분석 (5) 기타 조사목적에 필요한 사항	■ 내용수정	■ 수정
3-3 막장관찰 3.3.1 현장기술자는 터널공사시에 노출되는 막장의 지반상태를 관찰하고 조사하여 설계시에 적용한 지반조건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2 막장관찰시 다음사항을 조사하고 암반분류를 실시하여 지보 패턴 적정성 검토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터널지질도를 작성하여 시공시의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1) 막장의 붕괴여부 및 붕괴위치 , 형태 및 규모 (2) 암종, 풍화정도, 고결정도, 강도 암반등급 및 지층분포 (3) 절리, 단층 등의 주향과 경사 및 터널방향과의 관계 (4) 층리, 절리, 단층의 간격, 틈새, 충전물 유무와 성상 (5) 용수의 위치, 토립자 유실유무 및 유출정도 (6) 기타 필요한 사항 3.3.3 막장관찰자는 지질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나 경험을 구비한 자로서 막장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터널 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3.3.4 실제 지반상태가 설계시의 적용조건과 상이하여 설계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5 막장관찰은 매 막장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7장 터널공사”로 이기 - 본 항목은 터널시공을 위한 조항이므로	■ 삭제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10 물리탐사	1-5 물리탐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방서는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물리탐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지방서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탐사 전산출력 자료 (2) 탐사 단면도 및 이상대 분포 유무 (3) 탐사결과 분석보고서 (4) 기타 탐사목적에 상응한 탐사결과 출력물 (5) 시추주상도와와의 비교분석도 2. 재료 해당 없음.	■ 목차통일	■ 추가
3.10.1 일반사항 (1) 물리탐사 및 검층은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에 의한 전기탐사, 전자탐사, 레이다탐사, 전기 및 음파검층으로 하고 조사종목 및 내용은 해당공사의 목적에 맞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물리탐사는 지층의 성층상태와 성질, 표토 또는 풍화층 등의 두께와 성질, 지반의 성질과 표면의 형태, 파쇄대의 위치와 규모, 공동의 위치와 규모, 지하수의 존재 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u>전기검층은 보다 정밀한 주상도를 얻는 것과 지층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음파검층은 P파와 S파의 전파속도와 각 지층의 동탄성계수를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4) 터널 근접부의 파쇄대 분포탐지나 지하공동을 탐지함에 있어서 지표레이다 탐사, 시추공 레이다 또는 지오토모그래피 등 정밀 물리탐사 기술을 조합, 활용하면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물리탐사 및 검층은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전자탐사, 지표레이다탐사, 시추공간 물리탐사 및 공내검층으로 하고 조사종목 및 내용은 해당공사의 목적에 맞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1.2 지반의 성층상태와 성질, 표토 또는 풍화층 등의 두께와 성질, 지반의 성질과 표면의 형태, 파쇄대의 위치와 규모, 공동의 위치와 규모, 지하수의 존재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다. 3.1.3 터널 근접부의 파쇄대 분포탐지나 지하공동을 탐지함에 있어서 지표레이다 탐사, 시추공 레이다 또는 지오토모그래피 등 정밀 물리탐사 기술을 조합, 활용하면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 내용수정 및 삭제	■ 수정
3.10.2 굴절법 탄성파탐사 (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측선단의 파일과 측선 중간의 파일은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색깔별로 구분하여 보존할 수 있는 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병호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기준점의 위치와 높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탄성파 탐사 3.2.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2.2 <u>정밀한 탐사결과를 얻기 위해 탐사 주변의 소음을 최소화 되도록 하며,</u> 측선단의 파일과 측선 중간의 파일은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색깔별로 구분하여 보존할 수 있는 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기준점의 위치와 높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용어수정 굴절법 탄성파탐사 -->탄성파탐사 ■ 내용삽입	■ 수정

2-2 용지 경계 측량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 <u>시공자는 시험에 필요한 화약의 사용과 보관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하며 위해 및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u> (4) 발파시에는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 호각 등에 의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5) 발파공은 조사종료 후 다짐하여 되메워야 한다. (6) 2점 이상 연속한 측점에서 결측된 경우에는 재측정하여야 한다. (7) 측정결과는 측선배치도, 주시곡선도, 단면도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8) 주시곡선도 또는 단면도에는 해석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2.3 <u>발파를 발진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시공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자는 시험에 필요한 화약의 사용 , 보관 및 도난 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u> 3.2.4 <u>식생 등 자연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발파시에는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 호각 등에 의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u> 3.2.5 발파공은 조사종료 후 다짐하여 되메워야 한다. 3.2.6 <u>현장여건 상 해머 타격에 의한 탐사시 타격에너지에 의한 가탐심도 및 해상도를 감안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주변 노이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u> 3.2.7 2점 이상 연속한 측점에서 결측된 경우에는 재측정하여야 한다. 3.2.8 측정결과는 측선배치도, 주시곡선도, 단면도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3.2.9 주시곡선도 또는 단면도에는 해석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내용삽입 및 문구수정	■ 수정
3.10.3 전기탐사 (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전극의 배치는 탐사의 목적에 맞게 설정하고, 전극의 간격은 탐사하고자 하는 지반의 심도와 전극배열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3) <u>최대 전극간격의 선정은 탐사심도에 따른다.</u> (4) 전극의 전개는 현장여건상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상되는 지질 구조의 주향에 직각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5) 측정은 측정치를 비저항 전극간격곡선(p-a)에 <u>플로트</u> 또는 제어 컴퓨터상에서 확인하면서 수행하고 이상적인 값이 얻어졌을 때에는 바로 전극을 바꿔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탐사결과는 측정배치도와 수직탐사의 경우는 겹보기 전기비저항곡선, 쌍극자배열 전기비저항탐사의 경우는 겹보기 전기비저항가단면도에 정리하며, 이외에 해석결과에 따른 비저항 등가선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3 전기비저항탐사 3.3.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3.2 전극의 배치는 탐사의 목적에 맞게 설정하고, 전극의 간격은 탐사하고자 하는 지반의 심도와 전극배열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3.3.3 <u>특히, 탐사 대상 전구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탐사측선의 연장을 충분히 계획하여 대상구조물 하부 지반상태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u> 3.3.4 전극의 전개는 현장여건상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상되는 지질 구조의 주향에 직각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3.3.5 측정은 측정치를 비저항 전극간격곡선(p-a)에 <u>도시하거나</u> 또는 제어 컴퓨터상에서 확인하면서 수행하고 이상적인 값이 얻어졌을 때에는 바로 전극을 바꿔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6 탐사결과는 측정배치도와 수직탐사의 경우는 겹보기 전기비저항곡선, 쌍극자배열 전기비저항탐사의 경우는 겹보기 전기비저항 단면도에 정리하며, 이외에 해석결과에 따른 비저항 등가선도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u>예상 파쇄대 및 이상대 분포여부를 탐사단면도에 기재하여야 한다.</u>	■ 용어변경 전기탐사 ---> 전기비저항탐사 ■ 내용수정 ■ 어구 수정	■ 수정
3.10.4 전자탐사 (1) 3.10.3의 전기탐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올바른 자료획득이 어려운 지역, 즉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지역이나 전극과 땅의 접촉이 불량할 수 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동일한 전기비저항 단면을 제공할 수 있는 전자탐사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3.4 전자탐사 3.4.1 3.3의 전기비저항탐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올바른 자료획득이 어려운 지역, 즉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지역이나 전극과 땅의 접촉이 불량할 수 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동일한 전기비저항 단면을 제공할 수 있는 전자탐사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2) 시공자는 탐사실시 전 탐사장비 및 탐사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기준측선의 설정, 측선, 간격, 측선의 총연장, 측정간격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4.2 시공자는 탐사실시 전 탐사장비 및 탐사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3 시공자는 기준측선의 설정, 측선, 간격, 측선의 총연장, 측정간격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10.5 지표레이다(GPR)탐사 (1) 지표레이다 탐사는 지하에 묻혀 있는 대상체를 찾아내거나 지하에 존재하는 불균질대 또는 파쇄대 등의 지질학적 구조를 규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탐사는 송수신 안테나를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시킨 후 측선을 따라 두 안테나를 동시에 일정 간격씩 옮겨가며 측정한다. (3) 시공자는 지표레이다 탐사결과로 얻어진 자료의 컴퓨터 수치모형 계산(전산처리)를 통하여 구한 레이다 단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지표레이다(GPR)탐사 3.5.1 지표레이다 탐사는 지하에 묻혀 있는 대상체를 찾아내거나 지하에 존재하는 불균질대 또는 파쇄대 등의 지질학적 구조를 규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3.5.2 탐사는 송수신 안테나를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시킨 후 측선을 따라 두 안테나를 동시에 일정 간격씩 옮겨가며 측정한다. 3.5.3 시공자는 지표레이다 탐사결과로 얻어진 자료의 컴퓨터 수치모형 계산(전산처리)을 통하여 구한 레이다 단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0.7 음파검층 (1) 검층은 케이싱의 삽입부분 및 지하수위의 관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싱의 삽입부분에서도 뺄 수 있는 경우에는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진기는 공내용 수진기 및 스타트 쇼트용 수진기를 사용하며 공내용 수진기는 상하 1성분, 수평 2성분의 측정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측정은 주변의 차량 등의 진동에 따른 직접적 잡음을 피해 실시하여야 한다. (4) 붕괴 등에 의해 측정불능인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추공 직경의 변화가 클 경우 시공자는 발,수진기의 조합을 2조 이상으로 하여 속도치에 시추공 직경의 영향을 경감하는 공벽보상형(Bore hole Compensated, 약칭 BHC) 음파검층을 시행하여야 한다.		■ 목차조정	■ 수정
3.10.8 지오토모그래피 (1)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시추공을 이용하며, 시추공내에 위치하는 송신원에서 발생된 탄성과 또는 전자기파(레이다파)를 매질로 방사시켜 시추공 사이의 다양한 경로를 따라 전파하는 파의 주행시간이나 진폭을 측정하고, 측정된 자료의 행렬 역산 등을 통하여 2차원 또는 3차원의 지하 매질의 속도, 흡수성 또는 전기비저항과 같은 물성의 분포를 영상화하여야 한다.	3.6 시추공간 물리탐사 3.6.1 <u>시추공간 물리탐사는 2개소 이상의 시추공 사이의 연속적이고 상세한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u> 3.6.2 지오토모그래피(Geotomography) (1)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시추공을 이용하며, 시추공내에 위치하는 송신원에서 발생된 탄성과 또는 전자기파(레이다파)를 매질로 방사시켜 시추공 사이의 다양한 경로를 따라 전파되는 파의 주행시간이나 진폭을 측정하고, 측정된 자료의 행렬 역산 등을 통하여 2차원 또는 3차원의 지하 매질의 속도, 흡수성 또는 전기비저항과 같은 물성의 분포를 영상화하여야 한다.	■ 목차조정 및 관련용어 삽입	■ 추가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7.6 음파 수진기는 공내용 수진기 및 스타트 쇼트용 수진기를 사용하며 공내용 수진기는 상하 1성분, 수평 2성분의 측정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변의 차량 등의 진동에 따른 직접적 잡음을 피해 실시하여야 한다. 시추공 직경의 변화가 클 경우 시공자는 발,수진기의 조합을 2조 이상으로 하여 속도치에 시추공 직경의 영향을 경감하는 공벽보상형(Bore hole Compensated, 약칭 BHC) 음파검층을 시행하여야 한다. 3.7.7 붕괴 등에 의해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10.7 음파 검층 내용	
3.7 시추	1-6 시추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방서는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시추조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ASTM D 2113 암석코아 시추 및 시료채취 1.3 제출물 1.3.1 본 지방서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추조사 위치도 (2) 시추주상도 (3) 지층단면도 (4) 기타 시추조사 목적에 상응하는 결과 2. 재료 해당 없음.	■ 목차통일 및 내용삽입	■ 추가
터널시공에 있어서 시공중 구간내의 지반의 지층구성, 단층, 파쇄대 등의 불연속면의 위치와 폭, 지하수 유출량을 파악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현장시험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평 또는 수직시추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목적과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경사시추를 할 수 있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공사구간내의 지반의 지층구성, 단층, 파쇄대 등의 불연속면의 위치와 폭, 지하수 유출량을 파악하고 시료를 채취하며, 현장 시험을 수행할 경우에는 수직시추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목적과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수평 및 경사시추를 할 수 있다. 3.1.2 시추조사 결과 연약지반의 출현이 파악되면 정확한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콘관입시험 등을 추가 실시한다.	■ 내용추가삽입 및 수정	■ 수정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7.1 시추의 종류 시추기계는 회전-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의 특성이나 시추목적에 따라 오거보링기, 회전식보링기, 세척식보링기, 충격식보링기 중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시추기를 사용할 수 있다.	3.2 시추기의 종류 3.2.1 시추기계는 회전-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2.2 다만, 지반의 특성이나 시추목적에 따라 오거보링기, 회전식보링기, 세척식보링기, 충격식보링기 중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추기를 사용할 수 있다.		
3.7.2 시추공의 크기, 간격 및 심도 (1)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크기는 NX 이상이어야 하며, 시추공벽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풍화암까지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얇은 관(Thin-walled tube)에 의한 시추공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의 시추공의 크기는 이용하고자 하는 관의 외경보다 10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추공내 횡방향 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간극수압측정 등을 행할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NX이상이어야 한다. (4) 시추공의 간격 및 심도는 토질조사기준에 의거하여 실시(교대·교각마다 1개소 : 조사목적, 설계 내용에 따라 연암층, 또는 경암층까지, 터널 개소당 최소한 4개소 : 필요깊이까지)한다. 다만 석회암지대의 경우에는 공동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구조물 부위의 확인시추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3 시추공의 크기, 간격 및 심도 3.3.1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크기는 NX(Φ76mm)이상이어야 하며, 시추공벽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풍화암까지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얇은 관(Thin-walled tube)에 의한 시추공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의 시추공의 크기는 이용하고자 하는 관의 외경보다 10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시추공내 횡방향 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간극수압측정 등을 행할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NX(Φ76mm)이상이어야 한다. 3.3.4 시추공의 간격 및 심도는 토질조사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다만 <u>석회암지대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 실시할 수 있다.</u>	■ 내용수정 ■ 시험횟수 등은 본항목에 부적합하여 삭제.	■ 수정
3.7.3 시추관리 (1) 시공자는 시추작업 개시 전에 전문기술자를 임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추작업은 승인 받은 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추에 앞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준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추 및 그 성과에 사용하는 표고를 정하여 그 위치를 평면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시추중에는 추진속도, 로드압력계, 펌프압력계, 용수량 및 배수량, 배수색깔, 슬라임의 상태, 이물질의 혼입등에 주의하고 이들의 변화를 심도와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얇은 층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시추 도중 용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심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또 조사 완료까지는 매일 작업 개시 전에 공내수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상시수위는 시추공내 수위부근의 우물수위 및 계절적인 수위의 변동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시멘테이션(Cementation)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시추관리 3.4.1 시공자는 시추작업 개시 전에 전문기술자를 임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추작업은 승인 받은 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4.2 시추에 앞서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준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추 및 그 성과에 사용하는 표고를 정하여 그 위치를 평면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4.3 시추 중에는 추진속도, 로드압력계, 펌프압력계, 용수량 및 배수량, 배수색깔, 슬라임의 상태, 이 물질의 혼입등에 주의하고 이들의 변화를 심도와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얇은 층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4 시추 도중 용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심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또 조사 완료까지는 매일 작업 개시 전에 공내수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상시수위는 시추공내 수위부근의 우물수위 및 계절적인 수위의 변동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내용 일부 삭제	■ 삭제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6) 시추에 의해 암 또는 이에준하는 코아채취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추는 <u>NX구경 이상으로 이중코아배럴(Double core barrel)</u>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에서는 코아회수율을 높이고 원상태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삼중코아배럴이나 D-3 샘플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추중 사고방지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드의 승강 또는 급압의 변화를 반복해서 코아를 파손시켜서는 안된다. 3.7.4 결과의 정리 (1) 각 시추공으로 부터 구한 상세한 정보는 시추주상도에 기록하며, 현장에서 시추공 굴착자 및 조사자는 시추주상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추조사명 및 시추공번호 ② 위치 및 조사기간, 굴착자, 조사자 이름 ③ 시추공 자료 및 지반고(표고) ④ 시추공의 수량(심도) 및 종류 ⑤ 시추장비 및 구경 ⑥ 지하수위 평가 및 관찰날짜 ⑦ 지반성층 ⑧ <u>표준관입저항치</u> 및 표준관입시험 깊이 ⑨ 채취된 흙시료의 깊이, 형태 및 길이 ⑩ 시험지반 굴착부 각 단면에 대한 실태조사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⑪ 암석코아 채취의 경우 코아회수율, RQD, 암석명, 색깔, 절리간격과 경사, 절리면의 거칠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실내시험을 완료한 후 전문기술자는 시추주상도와 실내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부터 주석을 덧붙여 새로운 시추주상도(최종분)을 준비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전문기술자가 서명날인한 시추주상도(최종분)을 감독원이 요구하는 부수 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3.4.5 암 또는 이에 준하는 코아채취를 시행하는 경우 시추는 <u>NX(Φ76mm)구경 이상으로 D-3 코아배럴을 사용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풍화대나 파쇄대 등에서는 코아회수율을 높이고 원상태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삼중코아배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암질상태가 양호하고 장심도 조사에서는 이중코아배럴을 감독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u> 3.4.6 시추조사로 부터 구한 상세한 정보는 시추주상도에 기록하며, 현장에서 시추공 굴착자 및 조사자는 시추주상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추조사명 및 시추공번호 ② 위치 및 조사기간, 굴착자, 조사자 이름 ③ 시추공 자료 및 지반고(표고) ④ 시추공의 수량(심도) 및 종류 ⑤ 시추장비 및 구경 ⑥ 지하수위 평가 및 관찰날짜 ⑦ 지반성층 ⑧ <u>표준관입시험값(N)</u> 및 표준관입시험 깊이 , <u>해머종류와 형식</u> ⑨ 채취된 흙시료의 깊이, 형태 및 길이 ⑩ 시험지반 굴착부 각 단면에 대한 실태조사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⑪ 암석코아 채취의 경우 코아회수율(TCR), RQD, 암석명, 색깔, 절리간격과 경사, 절리면의 거칠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4.7 시추조사 완료 후 주변정리 및 폐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기간의 지하수위 관측이 필요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하에 시추공 보호캡등을 설치할 수 있다. 3.4.8 지하매설물 등의 지장물 예상구간은 시추작업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매설심도 및 위치를 확인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내용수정 및 삭제 ■ 용어수정 및 내용추가 ■ 도공검토 추가사항	■ 수정 ■ 추가
	1-7 시험굴조사와 핸드오거보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방서는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시험굴조사와 핸드오거보링에 적용한다.	■ 목차통일 및 내용추가	■ 추가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1.2 참조규격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20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19 오거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채취방법 1.3 제출물 1.3.1 본 지방서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위치도 (2) 시험굴 주상도 (3) 핸드오거보링 주상도 (4) 기타 조사 목적에 상응하는 결과 2. 재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깎기구간에서는 시험굴조사를 200m 간격으로 실시하여 쌓기 재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쌓기구간에서는 200m간격으로 시행하여 연약지반의 분포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사간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1.2 모든 토질시료는 통일분류방식으로 분류하며, 시험굴 조사의 경우 다음의 시험을 시행하여 포장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토질분류시험 (2) 다짐시험 (3) CBR시험(수정) 3.1.3 핸드오거보링 조사결과, 성토기초로서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연약지반이 출현할 경우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여 연약지반의 심도와 설계정수를 파악하여야 한다.	■ 목차통일 및 내용추가 ■ 연약지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간격 조정	■ 추가 ■ 수정
3.8.4 테스트 피트(Test pit) (1) 테스트 피트는 저면의 크기는 1.5m 이상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출입금지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 테스트 피트 벽면 및 저부의 토질을 관찰 기록하고 시험용 시료는 대표적인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	3.2 시험굴조사 3.2.1 계획노선 중 땅각기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토공작업에 의해 발생될 토사층이 흙쌓기재료 또는 도로 노반재로서의 사용가능성 여부와 흙의 다짐특성, 토랑변화율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력이나 굴착기를 사용하여 지표면으로부터 1.2~1.5m내외의 심도까지 굴착하여 조사한다.	■ 내용수정	■ 수정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3 핸드오거보링 3.3.1 쌓기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지층 구성상태에 따른 연약지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3.3.2 조사방법은 KS F 2319에 의하며 채취된 시료에 대한 토질분류시험을 실시한다.	■ 내용삽입	■ 추가
3.9 사운딩(Sounding)	1-8 원위치시험과 시험굴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방서는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현장 원위치 시험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시험 방법 JIS A 1220 딛치 콘 관입 시험 방법 ASTM D 5778 피에조콘 시험 방법 ASTM D 4719 흙의 공내수평재하시험 방법 ASTM D 4971 압반내 공내 재하 시험 방법 ASTM D 4645 수압파쇄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지방서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위치도 (2) 각 원위치 시험과 시험굴착에 해당하는 시험성과표 (3) 기타 시험 목적에 상응하는 결과물 2. 재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원위치시험이라 함은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시되는 각종 시험(표준관입시험, 공내수평재하시험, 공내투수시험, 수압시험(현장투수시험), 공내전단시험, 공내영상촬영, 수압파쇄시험 등)과 원위치 시험(CPT, CPTu, 베인전단시험 등)을 포함한다. 3.1.2 원위치 시험의 항목과 위치는 조사목적과 부합되는 세부 자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1.3 시추조사 공내에서 실시되는 원위치 시험의 경우 공벽의 교란 정도가 시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현장의 응력상태를 고려한 시험이 되도록 공벽의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숙련된 시추작업자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용어변경 사운딩 --> 원위치시험 ■ 목차통일 및 내용삽입	■ 추가

2-2 용지 경계 측량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9.1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따른다. (2) 시추공내에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심도 측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시험심도가 지정되어 있는 새로운 위치에 지금까지 실시한 시험을 포함하여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표준관입시험의 간격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동일 토층의 경우 <u>1.5m이내의 간격으로 연속성 있게</u>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층이 나타나면 해당층의 상부에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여 지반의 N값 측정과 흐트러진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토층의 두께가 50cm이하의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결과에는 다음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험시 본 타격 개시깊이 및 종료깊이 ② 타격수와 누계관입량의 관계를 도시 ③ 본 관입 30cm에 대한 타격횟수를 N값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채취시료의 관찰결과를 기재한다.	3.2 표준관입시험 3.2.1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따른다. 3.2.2 시추공내에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심도 측정 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시험심도가 지정되어 있는 새로운 위치에 지금까지 실시한 시험을 포함하여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2.3 표준관입시험의 간격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동일 토층의 경우 <u>규정에 따라 연속적으로</u>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층이 나타나면 해당층의 상부에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여 지반의 N 값 측정과 흐트러진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토층의 두께가 50cm이하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u>N 값은 해머의 에너지 효율, 로드길이 등에 대해 적절한 보정을 하여야 한다.</u> 3.2.4 시험결과에는 다음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시험시 본 타격 개시깊이 및 종료깊이 (2) 타격수와 누계관입량의 관계를 도시 (3) 예비관입부(초기상부 15cm)는 교란영역으로 판단하여 타격 횟수 N값에서 제외하고, 본 관입 30cm에 대한 타격횟수를 N값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4) 채취시료의 관찰결과를 기재한다.	■ 어구 수정, KS 규정변경내용 추가 ■ 내용추가	
3.9.2 스웨덴식 사운드링 시험 (1) 스웨덴식 사운드링 시험기를 이용하여 지반의 관입저항을 측정하여 지반의 <u>강약</u>, 다져진 정도 및 토질층의 구성을 판정하는 시험에 적용한다. (2) 관입속도가 갑자기 증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관입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시험결과는 종축에 깊이 D, 횡축에 하중의 크기 W_{sw}와 관입량 1m당 반회전수(180°회전수) N_{sw}를 취하여 <u>그림을 그려야 한다.</u> (4) 하중의 크기 및 반회전수의 측정치로부터 측정된 흙의 강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3.3 스웨덴식 원위치 시험 3.3.1 스웨덴식 원위치 시험기를 이용하여 지반의 관입저항을 측정하여 지반의 <u>연경</u>, 다져진 정도 및 토질층의 구성을 판정하는 시험에 적용한다. 3.3.2 관입속도가 갑자기 증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관입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3.3 시험결과는 종축에 깊이 D, 횡축에 하중의 크기 W_{sw}와 관입량 1m당 반회전수(180°회전수) N_{sw}를 취하여 <u>도시하여야 한다.</u> 3.3.4 하중의 크기 및 반회전수의 측정치로부터 측정된 흙의 강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 문구수정 ■ 문구수정	
3.9.3 현장배인시험 (1) 현장 배인전단 시험은 KS F 2343에 따른다. (2)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배인 삽입전에 시추공을 청소한다. ② 배인 날개를 고정시켜 배인을 멈추지 않고 한번에 삽입한다. ③ 삽입완료 후 로드를 상부장치에 고정하고 검력계 등을 조사한다. ④ 회전시킬 때는 최대 6°/min 이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현장배인시험 3.4.1 현장 배인전단 시험은 KS F 2343에 따른다. 3.4.2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배인 삽입전에 시추공을 청소한다. (2) 배인 날개를 고정시켜 배인을 멈추지 않고 한번에 삽입한다. (3) 삽입완료 후 로드를 상부장치에 고정하고 검력계 등을 조사한다. (4) 회전시킬 때는 최대 6°/min 이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⑤ 최대회전력을 결정한 다음에는 교란된 상태에서 베인을 최소 10회 정도 빨리 회전시킨다. 다시 성형된 시료의 강도를 결정하려면 빨리 회전시킨 후 베인날개를 회전시켜 교란된 흙의 강도를 측정한다. 이때 시험은 성형작업을 마친 후 1분 이내에 끝내야 한다.	(5) 최대회전력을 결정한 다음에는 교란된 상태에서 베인을 최소 10회 정도 빨리 회전시킨다. 다시 성형된 시료의 강도를 결정하려면 빨리 회전시킨 후 베인날개를 회전시켜 교란된 흙의 강도를 측정한다. 이때 시험은 성형작업을 마친 후 1분 이내에 끝내야 한다.		
3.9.4 덩치 콘 관입시험(Dutch cone penetrometer) (1) 덩치 콘 관입시험은 JIS A 1220에 따른다. (2) 콘 시험기는 이중관이어야 하고, 선단저항력과 로드 주변마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덩치콘 관입시험(Dutch cone penetrometer) 3.5.1 덩치 콘 관입시험은 JIS A 1220에 따른다. 3.5.2 콘 시험기는 이중관이어야 하고, 선단저항력과 로드 주변마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5.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9.5 피에조 콘 관입 시험(Piezo cone penetrometer) (1) 피에조콘 관입시험은 ASTM D 5778에 따른다. (2) ASTM D 5778에서 규정한 콘 이외의 경우에는 관입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위치, 심도, 간극수압측정(소산시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지반의 간극수압 측정시에는 시험 전에 완전히 포화시킨 피에조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피에조콘 관입시험(Piezo cone penetrometer) 3.6.1 피에조콘 관입시험은 ASTM D 5778에 따른다. 3.6.2 ASTM D 5778에서 규정한 콘 이외의 경우에는 관입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6.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6.4 시험위치, 심도, 간극수압측정(소산시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5 지반의 간극수압 측정시에는 시험 전에 완전히 포화시킨 피에조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u>3.9.6 프레스미터 시험(Pressuremeter test)</u> (1) 프레스미터 시험은 ASTM D 4719에 따른다. (2) 시험에 사용되는 프레스미터 센서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위치(심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7 공내수평재하시험 <u>3.7.1 시험구간의 선정은 지층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하여 실시한다.</u> <u>3.7.2 지층의 구성상태에 따라 LLT, PMT, Goodman-jack 등의 시험기기를 이용하며, 시험규격을 참고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조합을 구성한다.</u> <u>3.7.3 시험과정에서 가압하는 하중단계의 크기는 지층의 연경상태에 따라 다르나, 연약한 점토의 경우 0.15kg/cm², 굳은 점토의 경우 0.5kg/cm², 약한 암반의 경우 1.0kg/cm²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토사지반의 경우 재하시 한계압력은 시추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판단한 다음 실시하여야 한다.</u> <u>3.7.4 변형계수의 산정방법은 장비에 따라 다르므로 보고서상에 명기하여야 한다.</u>	■ 용어변경 프레스미터시험 --> 공내수평재하시험 ■ 내용수정 및 추가	■ 수정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8 수압시험(현장투수시험) 3.8.1 수압시험은 수압을 이용하여 질리를 포함한 암반의 투수성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지반보강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된다. 3.8.2 수압시험에 따라 P(압력)-Q(주입량)의 곡선을 작성하고 투수계수와 Lugeon치를 구해야 한다. 3.8.3 각 압력단계별 주입량에 따라 Flow pattern을 파악하여 지반의 수리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3.8.4 매 압력단계에서는 동일압력을 5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3.8.5 매 압력단계는 1,3,5,7,9kgf/cm²으로 하며 가압범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8.6 시험구간은 매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하향식 Single packer 방식과 시추조사 완료후 실시하는 상향식 Double packer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3.8.7 각 packer방식은 서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험방식을 결정한다.	■ 내용추가	■ 추가
	3.9 공내전단시험 3.9.1 풍화대 구간의 원지반 강도정수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3.9.2 전단플레이트를 공벽에 부착시켜 수평압력을 가한후 수직력을 가하여 전단력을 산정한다. 또한 공벽에 직접 전단시험을 실시함으로 시추조사 시 공벽의 교란을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된다. 3.9.3 전단플레이트를 공벽에 압착한 후 5분 정도 유지한다. 3.9.4 접착압력을 5단계로 분할(5, 10, 20, 30kg/cm²)하여 각 단계별 압력에 대해 인발시험을 실시하며, 동일 심도에 대해 2회 실시하며, 이때 90°회전 시켜 시행한다.	■ 내용추가	■ 추가
	3.10 공내영상촬영 3.10.1 풍화암 이상의 암반의 불연속면의 방향성 및 파쇄대 , 위험구간 , 지질경계등을 영상화하는 기법으로 크게 초음파에 의한 방법과 광학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3.10.2 초음파에 의한 방법은 음파의 전달 매개체로서 공내 수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3.10.3 광학적 방법은 초소형 카메라를 삽입하여 공벽을 360°촬영하는 방법으로 굴진수 혼탁 및 투명관 삽입시 이물질의 끌림 현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0.4 불연속면의 방향성 측정을 위한 원점보정을 철저히 하고 실제 시추코아와 비교하여 그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심도보정, 방향보정, 경사보정)	■ 내용추가	■ 추가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11 수압파쇄시험 3.11.1 수압파쇄시험은 ASTM D 4645 수압파쇄 시험 방법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3.11.2 수압파쇄시험은 대상지반의 초기지압을 파악할 때 실시한다. 3.11.3 측정원리는 시추공내의 일정구간을 팽창성 패카로 밀폐한 뒤 이 구간내에 수압을 가하여 공벽을 인장 파괴시킨 후 가압과 중지의 사이클을 반복하여 발생된 균열의 열림과 닫힘에 따른 압력변화 양상을 측정하여 초기 지압성분을 산정한다.	■ 내용추가	■ 추가
3.6 시험굴착 자연상태를 직접확인 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의 원위치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굴착하여 조사할 수 있다. 3.6.1 시험굴착계획서 (1) 시험굴착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굴착의 위치 및 시기 ② 시험굴착의 목적 (토질 및 암석시험의 종류 및 번호) ③ 시험굴착의 규모 ④ 굴착에 따른 안정관리 대책 3.6.2 시험굴착 (1) 시험굴착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굴착 전경은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3) 시험굴착의 위치는 평탄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충분한 지지력을 갖는 장소이어야 한다. (4) 시험굴착 중 강우에 의한 붕괴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시트나 비닐류에 의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험굴착 후 굴착의 목적을 달성하면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6.3 시험굴착 결과보고 (1) 시험굴착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험굴착 지반에 대한 설계도서와의 상이 여부 ② 토질, 암질, 지하수위 등 지반특성 ③ 시험굴착부의 각 단면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④ 시험굴착 후 시행한 토질 및 암석시험의 종류 및 결과. ⑤ 기타 필요한 사항	3.12 시험굴착 자연상태를 직접확인 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의 원위치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굴착하여 조사할 수 있다. 3.12.1 시험굴착계획서 (1) 시험굴착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굴착의 위치 및 시기 ② 시험굴착의 목적 (토질 및 암석시험의 종류 및 번호) ③ 시험굴착의 규모 ④ 굴착에 따른 안정관리 대책 3.12.2 시험굴착 (1) 시험굴착은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굴착 전경은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3) 시험굴착의 위치는 평탄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충분한 지지력을 갖는 장소이어야 한다. (4) 시험굴착 중 강우에 의한 붕괴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시트나 비닐류에 의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험굴착 후 굴착의 목적을 달성하면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2.3 시험굴착 결과보고 (1) 시험굴착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험굴착 지반에 대한 설계도서와의 상이 여부 ② 토질, 암질, 지하수위 등 지반특성 ③ 시험굴착부의 각 단면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④ 시험굴착 후 시행한 토질 및 암석시험의 종류 및 결과 ⑤ 기타 필요한 사항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8 샘플링	1-9 시료채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방서는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시료채취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319 오거보링에 의한 토질조사 및 시료채취방법 1.3 제출물 해당 없음. 2. 재료 해당 없음.	■ 목차통일 및 내용추가 ■ 용어변경 샘플링 --> 시료채취	■ 추가
3.8.1 샘플링 종류 (1) 얇은기초의 지질조사시 샘플링은 KS F 2319에 따른다. (2) 깊은기초의 지질조사와 현장관입시험이 필요한 경우의 샘플링은 KS F 2318에 따른다. (3) 점성토 및 모래지반에 대한 <u>흩어지지 않는 시료</u> 의 샘플링은 KS F 2317에 따른다. 다만, 이외의 시료채취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료채취의 종류 3.1.1 얇은기초의 지질조사시 시료채취는 KS F 2319에 따른다. 3.1.2 깊은기초의 지질조사와 현장관입시험이 필요한 경우의 시료채취는 KS F 2307에 따른다. 3.1.3 점성토 및 모래지반에 대한 <u>불교란 시료</u> 의 채취는 KS F 2317에 따른다. 다만, 이외의 시료채취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어변경 흩어지지 않는 시료 -->불교란 시료	
3.8.2 <u>흩어진 시료의 샘플링</u> (1) <u>흩어진 시료</u> 의 채취시에는 시료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투명플라스틱병 또는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2) 시추공으로부터의 시료채취는 지반을 구성하는 지층이 변화할 때 마다 시행하고 동일층에 대해서도 연속성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3) <u>샘플링</u> 은 조사명칭, 시료채취일, 시추개시일과 완료일, 조사지점, 시추공의 상태, 지하수의 침투위치, 채취시 특이사항과 그 외 토질시험 및 암석시험에 참고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2 교란된시료의 채취 3.2.1 <u>교란된 시료</u> 의 채취시에는 시료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투명플라스틱병 또는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3.2.2 시추공으로부터의 시료채취는 지반을 구성하는 지층이 변화할 때 마다 시행하고 동일층에 대해서도 연속성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3.2.3 <u>시료채취</u> 는 조사명칭, 시료채취일, 시추개시일과 완료일, 조사지점, 시추공의 상태, 지하수의 침투위치, 채취시 특이사항과 그 외 토질시험 및 암석시험에 참고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용어변경 흩어진 --> 교란된 샘플링 --> 시료채취	■ 수정
3.8.3 <u>흩어지지 않는 시료의 샘플링</u> (1) <u>시료채취</u> 는 본절 3.8.2에 따른다. (2) 고정피스톤 얇은 관(Thin-walled tube) <u>샘플러</u> 의 사용에 있어서는 피스톤 로드(Piston rod) 또는 체인은 완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u>샘플링</u> 에 앞서 시추공 저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u>샘플러</u> 의 압입은 정지하지 않도록 정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충격, 진동등을 주어서는 안되며, 이때 샘플러의 관입길이는 시료채취 유효길이의 90%이내로 하여야 한다.	3.3 불교란시료의 채취 3.3.1 고정피스톤 얇은 관(Thin-walled tube) <u>시료채취기</u> 의 사용에 있어서는 피스톤 로드(Piston rod) 또는 체인은 완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3.2 <u>시료채취</u> 에 앞서 시추공 저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3 <u>시료채취기</u> 의 압입은 정지하지 않도록 정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충격, 진동등을 주어서는 안되며, 이때 시료채취기의 관입길이는 시료채취 유효길이의 90%이내로 하여야 한다.	■ 용어변경 흩어지지 않는 --> 불교란 샘플러 --> 시료채취기	■ 수정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5) <u>샘플러</u> 관입종료후 바로 회전을 주지 않고 채취하여야 한다. (6) 고정 피스톤식 얇은 관 <u>샘플러</u>로 채취한 시료는 파라핀 또는 실리콘 파우더, 기타 밀봉재료 봉하고 캡을 덮어 씌워야 한다. (7) 시료통에는 조사명칭,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관입깊이, 채취된 시료의 깊이 등을 기입한 표를 붙여야 한다. (8) 캡과 튜브와의 틈새를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시켜야 한다. (9) 시료는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시료의 운반, 보관에 있어서는 <u>샘플러에 상처를 내거나</u>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3.3.4 <u>시료채취기</u> 관입종료후 바로 회전을 주지 않고 채취하여야 한다. 이 때 인발과정에서 Suction에 의한 시료교란(응력해방)의 영향이 없도록 최소화 한다. 3.3.5 고정 피스톤식 얇은 관 <u>시료채취기</u>로 채취한 시료는 파라핀 또는 실리콘 파우더, 기타 밀봉재료 봉하고 캡을 덮어 씌워야 한다. 3.3.6 시료통에는 조사명칭,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관입깊이, 채취된 시료의 깊이 등을 기입한 표를 붙여야 한다. 3.3.7 캡과 튜브와의 틈새를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시켜야 한다. 3.3.8 시료는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3.9 시료의 운반, 보관에 있어서는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 용어변경, 내용추가 및 일부 문구 삭제	
3.8.4 <u>테스트 피트</u>(Test pit) (1) 테스트 피트 저면의 크기는 1.5m 이상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출입금지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 테스트 피트 벽면 및 저부의 토질을 관찰 기록하고 실험용 시료는 대표적인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		■ 내용중복	■ 삭제
3.8.5 표본용 시료 (1) 표본용 시료의 채취장소 , 시료개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표본용 시료는 함술량이 변화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투명 플라스틱병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3) 표본용 시료통에는 조사건명, 조사지점,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채취심도, 토질분류명칭, N값, 채취 연월일 등을 기입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 암석표본의 라벨은 직접 붙이지 않고 표면에 적당한 방법으로 라벨에 대응하는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시료를 넣은 병 또는 박스는 표본박스에 수집하여야 한다.		■ 내용삭제	
3.4 토질시험	<u>1-10 토질시험</u> <u>1. 일반사항</u> <u>1.1 적용범위</u> 본 지방서는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토질시험에 적용한다. <u>1.2 참조규격</u>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 목차통일 및 내용삽입	■ 추가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20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통일분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에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지방서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시험성과표 (2) 기타 시험 목적에 상응하는 결과물 2. 재료 해당 없음.	■ 목차통일 및 내용삽입	■ 추가
3.4.1 시료의 조제 (1)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방법은 KS F 2301에 따른다. (2) 역학시험용 시료의 성형시에는 특히 <u>흐트리짐</u>, <u>수분의 증발</u>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험용 시료는 1회 시험을 위한 최소 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4) 시험실에 반입된 시료가 <u>흩어짐</u>이나 <u>수분증발</u> 등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료의 조제 3.1.1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방법은 KS F 2301에 따른다. 3.1.2 역학시험용 시료의 성형시에는 특히 <u>교란</u>, <u>함수량의 변화</u>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3 시험용 시료는 1회 시험을 위한 최소 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3.1.4 시험실에 반입된 시료가 <u>교란</u>이나 <u>함수량의 변화</u> 등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 문구수정	
3.4.2 흙의 입도시험 (1) 흙의 입도시험은 KS F 2302에 따른다. (2) 항온수조의 <u>항온장치</u>는 <u>수조의 진동</u>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2 흙의 입도시험 3.2.1 흙의 입도시험은 KS F 2302에 따른다. 3.2.2 항온수조의 <u>항온장치</u>는 <u>진동</u>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용어변경 및 문구수정	■ 문구수정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4.3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및 수축정수시험 (1) 흙의 액성한계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2) 흙의 소성한계시험은 KS F 2304에 따른다. (3) 흙의 수축정수시험은 KS F 2305에 따른다. (4)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함수비 또는 이에 가까운 건조상태로 부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기록지에 시험시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3.3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및 수축정수시험 3.3.1 흙의 액성한계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3.3.2 흙의 소성한계시험은 KS F 2304에 따른다. 3.3.3 흙의 수축정수시험은 KS F 2305에 따른다. 3.3.4 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함수비 또는 이에 가까운 건조상태로부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기록지에 시험시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3.4.4 흙의 함수량시험 (1) 흙의 함수량시험은 KS F 2306 또는 ASTM D 3017에 따른다. (2) 시료는 함수량 변화가 없는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취하여야 한다. (3)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는 맨 먼저 자연함수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함수비 측정을 위한 저울은 동일한 것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사선을 활용한 급속함수량 측정시 시공자는 시험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검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공자는 시험장비의 이동 및 시험시 방사능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4 흙의 함수량시험 3.4.1 흙의 함수량시험은 KS F 2306 또는 ASTM D 3017에 따른다. 3.4.2 시료는 함수량 변화가 없는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취하여야 한다. 3.4.3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는 맨 먼저 자연함수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함수비 측정을 위한 저울은 동일한 것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3.4.4 방사선을 활용한 급속함수량 측정시 시공자는 시험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검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5 시공자는 시험장비의 이동 및 시험시 방사능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4.5 흙의 비중시험 (1) 흙의 비중시험은 KS F 2308에 따른다. (2) 비중병의 무게는 항상 뚜껑(stopper)과 함께 측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시험하여 평균치를 비중으로 하고, 2개의 비중차가 0.03이상이면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5 흙의 비중시험 3.5.1 흙의 비중시험은 KS F 2308에 따른다. 3.5.2 비중병의 무게는 항상 뚜껑(stopper)과 함께 측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시험하여 평균치를 비중으로 하고, 2개의 비중차가 0.03 이상이면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4.7 흙의 다짐시험 (1) 흙의 다짐시험은 KS F 2312에 따른다. (2) 점성토의 시험은 시험전 시료의 건조정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개시전에 함수비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램머의 가이드는 항상 시료표면에 있어야 하고, 가이드와 램머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짐 후의 1층의 두께가 규정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5) 함수비 곡선에는 최소 6개의 측정치가 있어야 한다. (6) 함수비를 증가시키기 곤란한 점토 또는 부서지기 쉬운 시료는 매회 새로운 시료를 사용(비반복법)하여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시료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면서 시험을 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흙의 다짐시험 3.6.1 흙의 다짐시험은 KS F 2312에 따른다. 3.6.2 점성토의 시험은 시험전 시료의 건조정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개시전에 함수비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6.3 램머의 가이드는 항상 시료표면에 있어야 하고, 가이드와 램머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4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규정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6.5 함수비 곡선에는 최소 6개의 측정치가 있어야 한다. 3.6.6 함수비를 증가시키기 곤란한 점토 또는 부서지기 쉬운 시료는 매회 새로운 시료를 사용(비반복법)하여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6.7 시료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면서 시험을 행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용지 경계 측량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4.8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시험 (1)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은 KS F 2320에 따른다. (2) 실내 CBR용 시료의 제작과정은 KS F 2312에 따른다. (3) 시험재하장치는 스크류잭을 사용하여야 한다.	3.7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시험 3.7.1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은 KS F 2320에 따른다. 3.7.2 실내 CBR용 시료의 제작과정은 KS F 2312에 따른다. 3.7.3 시험재하장치는 스크류잭을 사용하여야 한다.		
3.4.9 흙의 일축압축시험 (1) 흙의 일축압축 강도시험은 KS F 2314에 따른다. (2) 시험기는 변형제어형(Strain-controlled type)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측정된 변형률이 15%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한다. (4) <u>다시 이겨 성형한</u> 시료는 비닐로 포장하여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하고, <u>책상 위에</u> 놓고 조금씩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서 <u>다시 반죽한다.</u> 이 때 되반죽의 조작은 300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3.8 흙의 일축압축시험 3.8.1 흙의 일축압축 강도시험은 KS F 2314에 따른다. 3.8.2 시험기는 변형제어형(Strain-controlled type)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8.3 시험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측정된 변형률이 15%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한다. 3.8.4 <u>재성형한</u> 시료는 비닐로 포장하여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하고, <u>시험대 위에</u> 놓고 조금씩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서 <u>되반죽한다.</u> 이 때 되반죽의 조작은 300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 문구수정	
3.4.10 흙의 삼축압축시험 (1) <u>흙의 점성토의</u> 비압밀 비배수 시험(UU-test)은 KS F 234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CU-test)은 ASTM D 4767에 따른다. (3) 시험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축방향 변형률이 15%이상 될 때 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한다.	3.9 흙의 삼축압축시험 3.9.1 <u>점성토의</u> 비압밀 비배수 시험(UU-test)은 KS F 2346에 따른다. 3.9.2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CU-test)은 ASTM D 4767에 따른다. 3.9.3 시험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축방향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 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한다.	■ 문구수정	
3.4.11 흙의 압밀시험 (1) 흙의 압밀시험은 KS F 231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시험은 흙의 측면을 구속하고 축방향으로 배수를 허용하면서 재하할 때의 변형량과 시간을 구하는 압밀시험방법에 적용한다.	3.10 흙의 압밀시험 3.10.1 흙의 압밀시험은 KS F 2316에 따른다. 3.10.2 흙의 압밀시험은 흙의 측면을 구속하고 축방향으로 배수를 허용하면서 재하할 때의 변형량과 시간을 구하는 압밀시험방법에 적용한다.		
3.4.12 흙의 투수시험 (1) 흙의 투수시험은 KS F 2322에 따른다. (2) 정수위 투수시험의 경우 <u>흐트러지지 않는</u> 시료의 시험에서는 샘플 튜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투수원통에 옮겨 시험할 경우, 틈새는 <u>매웁용</u>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3) <u>흐트러지지 않는 시료에 대해서</u> 시험할 경우에는 자연상태에서의 투수방향과 시험시의 투수방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3.11 흙의 투수시험 3.11.1 흙의 투수시험은 KS F 2322에 따른다. 3.11.2 정수위 투수시험의 경우 <u>불교란</u> 시료의 시험에서는 샘플 튜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투수원통에 옮겨 시험할 경우, 틈새는 <u>매웁용</u>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3.11.3 <u>불교란 시료에 대해서</u> 시험할 경우에는 자연상태에서의 투수방향과 시험시의 투수방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 문구수정 ■ 문구수정	■ 수정
3.4.13 흙의 직접전단시험 (1) 압밀 배수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전단시험은 KS F 2343에 따른다 (2) 자연시료는 교란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전단상자의 마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12 흙의 직접전단시험 3.12.1 압밀 배수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전단시험은 KS F 2343에 따른다 3.12.2 자연시료는 교란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12.3 전단상자의 마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4.14 흙의 평판재하시험 (1)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은 KS F 2310에 따른다. (2)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은 KS F 2444에 따른다 (3) 흙의 평판재하시험은 도로의 노상, 노반,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계수를 구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한다.	3.13 흙의 평판재하시험 3.13.1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은 KS F 2310에 따른다. 3.13.2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은 KS F 2444에 따른다 3.13.3 흙의 평판재하시험은 도로의 노상, 노반,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계수를 구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한다.		
3.4.15 흙의 현장 단위중량시험 (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은 KS F 2311에 따른다 (2) 현장 단위중량시험 대상 지반의 최대입자 크기가 KS F 2311에서 정한 허용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sheet법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타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원재료인 흙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기준이 되는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내다짐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기준이 되는 건조단위중량을 다시 구하여야 한다.	3.14 흙의 현장 단위중량시험 3.14.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은 KS F 2311에 따른다 3.14.2 현장 단위중량시험 대상 지반의 최대입자 크기가 KS F 2311에서 정한 허용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sheet법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타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14.3 원재료인 흙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기준이 되는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내다짐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기준이 되는 건조단위중량을 다시 구하여야 한다.		
3.5 암석시험	1-11 암석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방서는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암석시험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ASTM D 2664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방법 ASTM D 2845 암석의 탄성과 속도측정 시험 방법 ASTM D 2936 암석코아시료의 직접 인장강도 시험 방법 ASTM D 2938 암석코아시료의 일축 압축강도 시험 방법 ASTM D 3017 암석코아시료의 탄성계수 시험 방법 ASTM D 3967 암석코아시료의 압열 인장 시험 방법 ASTM D 4644 파쇄암과 세일의 내구성시험 1.3 제출물 1.3.1 본 지방서 총칙편 2-4절 1.3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시험성과표 (2) 기타 시험 목적에 상응하는 결과물 2. 재료 해당 없음.	■ 목차통일 및 내용삽입	■ 추가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4.1 시편의 성형, 제작 및 시험일반 (1) 암석시편의 성형, 제작,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국제 암반역학회의 표준시험규정(Suggested method of ISRM :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과 미국표준 시험법(ASTM : American Standard for Testing and Materials) 등에서 권장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시추공마다 2~3개 이상의 암석시료 각각에 대하여 암석시편을 3개이상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암석시료는 풍화, 균열상태, 방향성, 함수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반의 대표적인 부분에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암석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시험시 주의하여야 한다. ① 시편의 모양 및 크기 ② 시편의 상하 가압면의 마무리 ③ 압축시험기의 가압판과 시험편의 가압면 사이의 접촉상태 ④ 건조정도 ⑤ 하중속도, 변형율속도 등 하중의 재하방법	3. 시 공 3.1 시편의 성형, 제작 및 시험일반 3.1.1 암석시편의 성형, 제작,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국제암반역학회의 표준시험규정(ISRM)과 미국표준 시험법(ASTM) 등에서 권장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1.2 시추공마다 2~3개 이상의 암석시료 각각에 대하여 암석시편을 3개이상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암석시료는 풍화, 균열상태, 방향성, 함수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반의 대표적인 부분에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3.1.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암석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시험시 주의하여야 한다. ① 시편의 모양 및 크기 ② 시편의 상하 가압면의 마무리 ③ 압축시험기의 가압판과 시험편의 가압면 사이의 접촉상태 ④ 건조정도 하중속도, 변형율속도 등 하중의 재하방법		
3.4.2 암석의 일축압축시험 (1) 암석의 일축압축시험은 KS F 2519 또는 ASTM D 2938, ASTM D 3148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며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가 2.0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직경은 NX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2 암석의 일축압축시험 3.2.1 암석의 일축압축시험은 KS F 2519 또는 ASTM D 2938, ASTM D 3148에 따른다. 3.2.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며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가 2.0이상이어야 한다. 3.2.3 시편직경은 NX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4.3 암석의 인장강도시험 (1) 암석의 인장강도시험은 ASTM D 2936 , ASTM D 3967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고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0.5~1.0이어야 하며 직경은 NX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 국제 암반역학회에서 제안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직접또는 간접 인장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3.3 암석의 인장강도시험 3.3.1 암석의 인장강도시험은 ASTM D 2936 , ASTM D 3967에 따른다. 3.3.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고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0.5~1.0이어야 하며 직경은 NX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3.3 국제 암반역학회에서 제안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직접또는 간접 인장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3.4.4 암석의 삼축압축시험 (1) 암석의 삼축압축시험은 ASTM D 2664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추형으로 지격에 대한 높이의 비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직경은 NX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암석 최대입자크기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3.4 암석의 삼축압축시험 3.4.1 암석의 삼축압축시험은 ASTM D 2664에 따른다. 3.4.2 시편은 원추형으로 지격에 대한 높이의 비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4.3 직경은 NX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암석 최대입자크기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4.5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 (1)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시험 ASTM D 2845에 따른다. (2) 시편은 NX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5.0cm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은 양쪽면이 서로 평행하며, 측정하는 축과 직각이어야 한다.	3.5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시험 3.5.1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시험 ASTM D 2845에 따른다. 3.5.2 시편은 NX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5.0cm 이상이어야 한다. 3.5.3 시편은 양쪽면이 서로 평행하며, 측정하는 축과 직각이어야 한다.		
	3.6 암석의 절리면 전단시험 <u>3.6.1 절리면 전단시험은 절리면의 마찰각과 점착력을 산정한다.</u> <u>3.6.2 절리면 시료는 현장에서 절리면이 포함된 블럭을 채취하거나 시추코어를 채취하여 시험기의 전단박스(shear box)에 맞게 물딩하여 제작한다.</u> <u>3.6.3 시험은 통상적으로 수직응력 수준을 몇 단계로 설정하여 각 수직응력 단계에 대하여 전단시험을 실시한다.</u> <u>3.6.4 시험결과를 Coulomb의 직선파괴식을 사용하여 회귀분석하여 절리면의 마찰각과 점착력을 산정한다.</u>	■ 내용추가	■ 추가
	3.7 암석의 내구성시험 <u>3.7.1 암석의 내구성시험은 ASTM D 4644에 따른다</u> <u>3.7.2 암석시료에 건습의 반복을 2회 주었을 때의 취약화,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조사하는 시험방법이다.</u> <u>3.7.3 시험시료를 시험장치(드럼)에 넣고 105℃의 온도로 2~6시간 노건조한다. 그 다음 시험장치를 수조에 세트하고 회전축 아래 20mm까지 물에 잠기게 한 다음, 시험장치(드럼)을 200rpm으로 10분간 회전시킨다. 그 후 드럼을 수조에서 꺼내고 105℃의 온도로 노건조시킨다. 냉각후 중량을 측정한다. 이 조작을 적어도 2번 실시한다.</u> <u>3.7.4 최종건조중량을 초기중량으로 나누어 내구성 지수 Id₂를 구한다.</u>	■ 내용추가	■ 추가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3.8 암석의 흡수팽창시험 3.8.1 ISRM의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을 근거로 실시한다. 3.8.1 원주상 또는 각주상의 공시체를 시험장치에 거치하고 공시체 각 축에 일치하도록 측정점을 정하고 지압판 및 변위계를 설치한다. 3.8.2 공시체 윗부분이 수침될 때까지 시험장치내 공시체 CELL에 물을 채우고 변위량이 일정하게 될 때까지 시간경과에 따른 변위를 측정한다.	■ 내용추가	■ 추가
3.5.6 기타 암석시험 (1) 암석시편의 제작이 곤란한 암질을 대상으로 한 시험, 밀도, 공극률, 탄성계수의 측정과 절리면 전단시험, 현장시험(공내 재하시험, 평판재하시험 등의 재하시험 포함)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 암반역학회(ISRM)에서 권장하는 시험방법이나 미국표준시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9 기타 암석시험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암석시험의 경우에는 국제 암반역학회(ISRM)에서 권장하는 시험방법이나 미국표준시험법을 기준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내용수정	■ 수정